

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(안)

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(일부) 지원 사업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. 3.

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규모: 예산범위 내
- 모집(신청)기한 : 공고일로부터 ~ 2021. 4. 2.(금) 18:00까지
- 지원내용: 해외 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심사비, 인증비 지원
 - 지원분야: CE·위생허가 등 444개 해외유명인증
 - 지원비율: 총 소요비용의 70% 지원 (30% 기업 자부담)
- 지원한도: 기업당 1,000만원 내, 최대 2개 인증 지원

2. 지원대상

-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기업
 -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
 - ※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

《지원제외대상》

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- ※ 단, 사업신청 전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공고일 기준 등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
-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)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
-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
 - ※ 단, 제품분야, 신청품목,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
-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(HS CODE 6자리 기준)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

3. 선정기준

-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(50점미만 배제)
- 벤처·Inno-Biz기업, 신기술(NET)기업, 신제품(NEP)기업, 여성·장애인기업, 창업기업(3년 이내) 등은 우대

4. 인증 및 지도기관

- 산통부에 품질경영 인증·수행을 보고하는 인증기관
 -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인정기관
 - CE 등 제품인증은 인증서(시험성적서)로 인증기관 확인 대체
-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
 - 해외규격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 2인 이상 보유,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내에 4건 이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함
 - 지도기관은 해당업체의 지도인력을 지정, 사업완료까지 지도
 -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를 통해 해당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관
- ※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인증기관 선택 시 해당인증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현황을 보고(제출)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

5. 중간점검 계획

- 참가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, 유선 면담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(서식 6)
- 서식 6호에 해당하는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시 지원대상에서 중단·제외함
 - 단, 지원대상 중단·제외에 앞서 참가기업에 대해 1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획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지원중단·제외여부를 결정
 - 지원중단·제외를 결정할 경우 해당기업에 내용을 통보하여 예비기업에게 기회를 제공
 - 참가기업·컨설팅 기관은 인증획득 관련하여 요청사항 또는 시정 명령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

6. 지원금 지급

- 道(충청남도경제진흥원)와 업체, 컨설팅 기관간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
 - 인증의 종류, 사업기간, 인증획득 소요비용,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
-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선정 통보
 -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
- 협약서의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
 - 인증 획득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한도액을 비교, 적은 금액 지급
 -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, 시험비 지원
 - 사업완료 보고서, 인증서(시험서)사본, 통장사본 내역 등 제출
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업체는 차기사업 참여 배제
 - ※ 지원대상 업체 또는 지도기관(컨설팅 社)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,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됨

7.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1. 4. 2.(금), 18:00까지
- 접 수 처 : (재)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
- 접수방법 :

신청방법	2021. 4. 2.(금) 18:00까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(www.cntrade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※ www.cntrad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수출지원사업 → 사업공고 확인 및 신청 ※ 서명/ 날인이 된 페이지 및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 못한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(alal9727@cepa.or.kr) 제출
제출서류	- 신청서 1부(서식 1, 2, 3) -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(신청서 첨부서류 참조) ※ 자체 추진시 서식 3번 생략

- 문 의 처 :
 -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박종혁 ☎ 041-539-4582